

부산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나42221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나42221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20690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정 담당변호사 안지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영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손태근

변론 종결2022. 3. 11.

판결 선고2022. 4. 15.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20690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54,171,1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4,171,1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54,291,27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291,2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6. D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14.9%, 지연이자 연 17.9%, 변제 방법 2023. 11. 1.까지 매월 1일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은 2020. 1. 1.부터 위 대여금채무의 분할상환금을 2회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39934호로 2020. 2. 7. 기준 대여원금

42,067,518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기타 비용 1,687,074원(=이자 1,061,578원+기타 비용

625,496원) 합계 43,754,592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20. 2. 12. 'D은

원고에게 43,754,592원 및 그 중 42,067,518원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3.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12. 19. 어머니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2. 23. 피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87049호로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 소유의 부동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사천시 E 소재 임야(이하 '사천시 임야'라 한다)만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부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의 재산

① 부동산 10,316,8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D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사천시 임야만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사천시 임야의 가액은 2019. 12. 15. 기준 10,316,800원이다.

② 퇴직금 채권 11,489,790원

을 제17호증에 의하면, 2019. 12. 31. 기준 D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예상퇴직금은 22,979,5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D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퇴직금 22,979,580원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1,489,790원은 압류가 금지되어 원칙적으로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고, 그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1,489,790원만이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③ 보험 해지환급금 7,568,040원

을 제22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12. 기준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은 H회사 2,657,380원, I회사 159,379원, J회사(K 보험) 798,710원, J회사(L보험) 1,705,552원, J회사(M보험) 906,207원, N회사 3,345,740원, O회사 5,359,36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바,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해약환급금 중 적극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는 금원은 환급금이 15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계약에서 각 150만 원을 공제한 H회사 1,157,380원(=2,657,380원 - 150만 원), J회사(L보험) 205,552원(=1,705,552원-150만 원), N회사 1,845,740원(=3,345,740원-150만 원), O회사 3,859,368원(=5,359,368원-150만 원)의 합계 7,068,040원이다.

④ 예금 채권 278,256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의 P조합 예금 잔액이 278,25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D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29,152,886원(=10,316,800원+11,489,790원+7,068,040원+278,256원)인 반면,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43,129,096원²⁾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본 D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D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D은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 전에 마쳐져 있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증여 후인 2019. 12. 2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당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먼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담보가액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가액이 180,000,0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5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동담보가액은 적어도 토지가액에서 위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130,000,000원을 상회한다고 볼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본다.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보전채권액을 계산하되,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이후 D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지급명령 확정액 중 이자 및 기타 비용에 관한 부분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변제액은 원금 42,067,518원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충당된다. 이에 따라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54,171,146원³⁾ [=원금 42,067,518원+원금 42,067,518원에 대하여 2020. 2. 8.부터 D의 마지막 변제일인 2022. 2. 25. 기준 지연손해금 잔액 11,814,803원+D의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22. 2. 26.부터 변론종결시인 2022. 3. 11.까지 연 1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88,825원⁴⁾]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54,171,14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4,171,1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권현영

판사조운정

판사이재회

별지

- 1) 원고는 제1심에서 사해행위의 전부 취소 및 원물반환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원물반환청구를 가액배상청구로 변경하였다.
- 2) 이 사건 지급명령 당시 기준 원금 42,067,518원에 이자 1,061,578원을 합한 금액이다.
- 3) 별지2 총당표 기재 참조
- 4) $42,067,518\text{원} \times 14\text{일} / 365\text{일} \times 17.9\%$